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청구유형 선택	공무원	[] 순직유족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청구 가능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비공무원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					
	퇴직연월일	①사망연월일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유형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별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란에 “✓” 표시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우편물수령주소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사망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자택전화		
	연락처 e-mail	@		
	③급여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④ 유족정보	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⑤장해유무	유족대표자여부	
					-	[] 있음	[]
					-	[] 있음	[]
					-	[] 있음	[]
					-	[] 있음	[]

제3자 해가	[] 가해자 있음 [] 가해자 없음 [] 가해자 불명					
	가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주소	연락처			
		보험회사명	담당자연락처	사건접수번호		
	합의 여부	[] 합의 ([] 보험 [] 일반 [] 공탁)		합의금액		합의일자
		[] 미합의	소송 여부	[] 예	사건번호	관할법원
[] 아니오						
※ 우리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 지급시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만약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재해유족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⑦ 순직유족 연금선택 여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 선택 함 [] 선택하지 않음
	※ '순직유족연금'은 순직유족급여 청구 후 순직으로 결정이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작성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⑧ 위험직무 순직유족 연금선택 여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 선택 함 [] 선택하지 않음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 후 위험직무순직으로 결정이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작성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⑨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⑩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의료법 기록열람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필수사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지

· 공단은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고지

· 공단은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및 의료법 기록열람에 대한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의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에 필요한 본인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을 동의하고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재해급여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일시, 보험금지급내역, 진단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및 민감정보(상병명 등)를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의 효력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가 완료된 날까지로 하며,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청구인

(서명 또는 인)

⑪ 임의대리인 심의결과 직접통보에 대한 동의

· 본인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신청을 대행하는 임의대리인에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을 직접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임의 대리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우편물수령주소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휴대전화 / 전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 -

구비서류

공통서류	<p>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부검을 한 경우 부검감정서 1부 별도제출)</p> <p>2.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1부</p> <p>3.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의 배우자·부·모·25세미만자녀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유족인 배우자가 25세미만 자녀의 대표자로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조부모 : 사망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 사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25세미만 손자녀 : 사망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손자녀의 주민등록표초본, 사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양부모·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p>※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되어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친권자 또는 후견인 지정) 추가첨부</p> <p>※ 유족이 손자녀·조부모, 25세 이상 장애자녀인 경우 공무원등과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부양(동거)사실확인서』 작성 제출 (* 서식 : 공단 홈페이지 게재)</p> <p>4.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을 첨부 	청구인																																																			
	<p>5. 사망경위조사서 1부(연금취급기관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 후 작성)</p>	기관																																																			
추가서류	<p>질병</p> <p>1.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건강검진문진표 사본 1부(내과질환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을 받은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병전 2회분 발급받아 제출 <p>2. 초과근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발병전 6개월 분) 사본 1부(김염성 질병 제외)</p>	기관																																																			
	<p>사망원인</p> <p>사 고</p> <p>□ 사고유형별 제출서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직무수행</th> <th>출퇴근 중</th> <th>출장 중</th> <th>행사 중</th> <th>당직근무</th> <th>교육훈련</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사고</td> <td>④</td> <td>①</td> <td>③</td> <td>⑥</td> <td>④</td> <td>⑨</td> </tr> <tr> <td>교통사고</td> <td>②④⑤⑧⑩</td> <td>①⑤⑧⑩</td> <td>②③⑤⑧⑩</td> <td>②⑤⑥⑧⑩</td> <td>②④⑤⑧⑩</td> <td>②⑤⑧⑨⑩</td> </tr> <tr> <td>폭행사고</td> <td>④⑦⑧</td> <td>①⑦⑧</td> <td>②③⑦⑧</td> <td>⑥⑦⑧</td> <td>④⑦⑧</td> <td>⑦⑧⑨</td> </tr> </tbody> </table> <p>[해당 서류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번호</th> <th>서 류 명</th> <th>번호</th> <th>서 류 명</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출·퇴근 경로도</td> <td>⑥</td> <td>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td> </tr> <tr> <td>②</td> <td>이동경로도</td> <td>⑦</td> <td>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 공소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td> </tr> <tr> <td>③</td> <td>출장명령부 사본</td> <td>⑧</td> <td>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td> </tr> <tr> <td>④</td> <td>각종근무일지(소방, 경찰등 해당)사본</td> <td>⑨</td> <td>교육·훈련 관련공문 사본</td> </tr> <tr> <td>⑤</td> <td>교통사고사실확인원</td> <td>⑩</td> <td>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td> </tr> </tbody> </table> <p>※ 상기 유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유형의 서류 제출</p> <p>※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 목격자 진술서, 보건일지, 방학 중 교육활동일지 등 공무원 부상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기타 증빙서류 제출</p> <p>※ ⑩ 합의서 사본의 경우 합의내용에 대한 상세내역 첨부(보험합의시 합의서 및 산출내역서)</p>	구 분	직무수행	출퇴근 중	출장 중	행사 중	당직근무	교육훈련	일반사고	④	①	③	⑥	④	⑨	교통사고	②④⑤⑧⑩	①⑤⑧⑩	②③⑤⑧⑩	②⑤⑥⑧⑩	②④⑤⑧⑩	②⑤⑧⑨⑩	폭행사고	④⑦⑧	①⑦⑧	②③⑦⑧	⑥⑦⑧	④⑦⑧	⑦⑧⑨	번호	서 류 명	번호	서 류 명	①	출·퇴근 경로도	⑥	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	②	이동경로도	⑦	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 공소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③	출장명령부 사본	⑧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④	각종근무일지(소방, 경찰등 해당)사본	⑨	교육·훈련 관련공문 사본	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⑩	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
구 분	직무수행	출퇴근 중	출장 중	행사 중	당직근무	교육훈련																																															
일반사고	④	①	③	⑥	④	⑨																																															
교통사고	②④⑤⑧⑩	①⑤⑧⑩	②③⑤⑧⑩	②⑤⑥⑧⑩	②④⑤⑧⑩	②⑤⑧⑨⑩																																															
폭행사고	④⑦⑧	①⑦⑧	②③⑦⑧	⑥⑦⑧	④⑦⑧	⑦⑧⑨																																															
번호	서 류 명	번호	서 류 명																																																		
①	출·퇴근 경로도	⑥	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																																																		
②	이동경로도	⑦	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 공소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③	출장명령부 사본	⑧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④	각종근무일지(소방, 경찰등 해당)사본	⑨	교육·훈련 관련공문 사본																																																		
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⑩	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																																																		
공무수행 사망자 인정청구	<p>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의 경우 “보험급여지급결정통지서” 사본 1부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적용자는 개별법령에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으로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p> <p>2. 사망자와의 고용관계 및 담당 사무를 증명하는 자료(계약서, 업무분장표 등)</p> <p>3. 사망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근거 자료(보수명세서, 공무수행에 따른 보수 또는 수당 지급근거 등)</p>	청구인 기관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등 유의사항

1.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만을 할 수는 없고 순직유족급여 청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와 같이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순직유족급여 청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되고 나아가,
 -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순직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 ⑥~⑦란은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등 청구 시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순직공무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 등 예우 및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사망연월일은 퇴직발령 후 사망한 경우에 추가 기재하십시오.
2. ②란의 사망자와의 관계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자녀·부모 등을 기재하십시오.
3. ③란의 급여수령 계좌는 청구인 실명 예금통장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십시오.
4. ④란은 유족대표자를 포함한 유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만약,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해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의 급여 제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5. ⑤란은 사망자의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 공무원등이 사망할 당시 자녀의 장애 상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시 25세 이상이라도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장애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무원등이 ' 21.6.23.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장애 상태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애등급 제1급에서 제7급까지에 해당 시 25세 이상이라도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은 「공무원재해보상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장애진단서는 장애인진단시설을 갖춘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6. ⑥란은 제3자 가해자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가해자가 있을 경우 가해자정보(성명, 주민번호(13자리),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없는 경우는 “가해자 없음”에 체크하십시오.)
 - ※ 가해자는 없지만 법령에 의해 소속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기재 (예, 국유재산법 관련해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7. ⑦란의 순직유족연금 선택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에 해당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대신에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직유족연금 미선택시는 「공무원연금법」의 위 급여 지급)
 - 순직유족연금 산출방법 : 기준소득월액의 38% + 5~20% (유족 1인당 5%가산, 최대 20%)
8. ⑧란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선택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에 해당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대신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미선택시는 「공무원연금법」의 위 급여 지급)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산출방법 : 기준소득월액의 43% + 5~20% (유족 1인당 5%가산, 최대 20%)
9. ⑨란의 연금취급기관장은 공무수행사망 인정 청구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합니다.(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
10. ⑩란의 개인정보 공동이용, 의료법 기록 열람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서명하십시오.(※ 필수사항)
 - 요양승인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등을 확인합니다.
 - 요양승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발송 및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의 송수신에 활용됩니다.
 - 요양승인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재해가 제3자에 의한 교통사고인 경우 재해급여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과의 개인신용정보 및 민감정보 자료(교통사고 발생일시, 보험금지급내역, 진단정보 등)의 송·수신에 활용됩니다.
11. ⑪란은 신청인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신청을 대행하는 임의대리인(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에게 심의결과를 직접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의하시는 경우 반드시 임의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보낼 곳(우편)

부서명	우편번호	주소
재해보상실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8층 재해보상실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 서식 안내

-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사업안내 → 재해보상
-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

【별 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확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확인하시고, 확인 란에 “V” 표시 하십시오.
- ② 해당 요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재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확인
1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土)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호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해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호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호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호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호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호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호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호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호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호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1~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